

消防力 向上 方案 小考

- 人力 및 士氣振作을 中心으로 -

申元李金 珠民在榮 暎喜華準*

I. 序 言

우리나라 最初의 消防機構는 隆熙2年 王宮消防隊가 그 嚆矢이며 그後 日帝時는 警察, 美軍政時는 地方自治團體, 政府 樹立 後에는 內務部 治安局 消防課에 배속 되었고 1975年에 民防衛 本部가 新設되면서 여기에 消防局을 設置 함으로 消防組織은 統治權者의 判斷과 必要에 따라 표류하는 배처럼 定着하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消防行政의 根幹이 되는 消防法이 1958年에 이르러서야 制定(法律 第485號) 되었으니 結果적으로 消防行政 發展은 느려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8世紀 以後의 産業革命은 各種 産業施設 規模의 大型化, 이에 따른 都市 人口集中은 建物を 大型化, 高層化, 地下化 하였고 各種 危險物의 大量取扱과 LPG, LNG 등의 一常化, 核(우라늄)의 實用化 등은 消防의 必要性을 절실히 要求하고 있다.

2000年代의 福祉社會 建設의 가장 시급한 行政의 우선순위가 國民(住民)의 安全을 지키는 일임을 생각할 때

消防의 目的은 火災를 豫防, 警戒, 鎮壓 및 救急에 이르기까지 國民의 生命, 財産을 保護하여

公共의 安寧과 秩序를 維持하며 社會福利 增進에 寄與¹⁾함에 있어 2000年代 일반行政의 目標와 消防의 目的이 完全한 合致를 이룬다.

따라서 이러한 消防의 目的을 達成하고 좀 더 質 좋은 對 住民 消防 Service를 提供하기 爲하여는 強力한 消防組織과 充分한 消防力이 있어야 하는바 現在의 消防力은 國民의 要求에 부응하기에는 力不足이다.

消防力은 通常 人員, 裝備, 水利의 三要素로 構成됨으로 本 研究論文에서는 人力과 士氣振作 方案을 다루어 消防力의 發展方向을 提示하여 消防行政 發展에 一助하고자 한다.

II. 消防人力의 向上

우리나라에 있어서 70年代와 80年代의 高度成長은 成長만을 내세운 結果 安全問題는 成長의 뒷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게 事實입니다.

따라서 國民의 安全을 지키는 消防力의 向上은 GNP의 增加率에 絶對 미흡함으로 國民의 욕구와 심한 不均衡을 이루게 되었다.

消防人力은 그 量的인 側面과 質的인 側面으로 區分해 볼 때 以下에서 우리나라의 消防人力

* 正會員 · 江原道 東草消防署 研究班

1) 消防法 第1條 參照.

現況과 그 問題點을 詳說하여 보면,

1. 消防人力의 現況과 問題點

가. 消防人力의 不足입니다.

87. 12. 30. 현재 우리나라의 消防人力은 다음 표(2-1)와 같다.²⁾

規模의 火災를 鎮火 時期를 놓쳐 被害를 擴大시키는 結果를 낳게 한다. 特히 消防署가 未設置된 郡地域은 民防衛課에 配置된 消防官 1人이 그 地域의 消防業務를 總括하고 있어, 事實上 消防行政 不在現象을 초래하고 있어 住民이 당연히 받아야 할 消防 Service를 받지 못하고 있는 實

(표2-1)

區 分 機 關 別	公 務 員			義 消 隊		請 願 消 防 員		自 衛 消 防 隊		어 린 이 消 防 隊	
	計	消 防 官	一 般 職 等	隊 數	隊 員	隊 數	隊 員	隊 數	隊 員	隊 數	隊 員
計	10,630 名	9,805	825	2,147 隊	66,045 名	1,353	5,332	31,369	1,751,968	5,947	480,919

* 公務員中 一般職等 825名은 一般職 30, 技能職 18, 雇傭職 730, 雜給職 47임.

이를 가까운 日本의 消防公務員數와 比較하여 보면 표(2-2)와 같다.³⁾

情이다.

(표2-2)

區 分	韓 國	日 本	日本 / 韓國
消 防 署 (人口 10 萬名當)	79 個署 (0.2 個署)	1,501 (1.2)	6.0 倍
派 出 所 (")	296 個所 (0.7 個所)	3,151 (2.6)	3.7
消 防 公 務 員 (")	8,957 (22 名)	129,610 (107)	4.8

* 韓國은 '86末, 日本은 '86.4.1 現在 人口比率을 基準으로 한것임.

위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消防人力은 日本과 比較하여 보아도 현저한 量的인 差異가 난다.

따라서 火災現場 出動時 車輛 1臺當 기관사 1名과 경방요원 1-2名 出動이 고작이어서 事實上 人命救助 等은 엄두도 낼 수 없고 指揮者도 관찰을 잡고 鎮火에 임하는 形便이어서 初期 小

나. 消防官의 士氣低下

1) 士氣의 概念

士氣란 辭典的 해석으로는 軍士의 勇氣를 내는 氣運이라 할 수 있고 消防公務員의 士氣란 이러한 單一概念 만은 아니며, 各 構成員의 感情, 情緒, 態度의 集合임과 同時에 組織의 복합적이고 合一的인 감정을 기초로 組織의 目的에 매진하는 行動을 자아내는 獨特한 精神狀態와 集團의 自律性이라 할 수 있으며, 士氣의 높고 낮음에 따라 組織의 目標 達成度도 엄청난 差異를 가져온다.

組織에 있어서 높은 士氣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效果를 가져온다.

① 構成員들로 하여금 組織 目的達成에 自發的으로 協力하게 한다.

② 構成員들로 하여금 組織과 指揮者에게 忠誠하게 한다.

③ 組織의 단결과 기강확립을 可能하게 한다.

④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組織의 能力 培養과 強力한 支持力을 키워준다.

⑤ 擔當職務와 組織活動에 對한 構成員의 관심 높아진다.

⑥ 構成員들의 창의적인 活動을 可能하게 한

2)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1988. 內務部刊 引用

3)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1988. 內務部刊 引用

가.

⑦ 構成員들이 組織에 對한 強한 所屬感과 自負心을 갖게 한다.

그러나 反對로 士氣가 낮으면 職場에 있어서의 不安定과 소강상태를 若起하여 職員間의 빈번한 다툼, 組織과 構成員에 對한 不信任, 消極的인 職務遂行, 法規와 命令의 違反 等 組織의 發展에 沮害가 된다.

2) 消防公務員 士氣 沮害要因

消防公務員의 行政 行態에 관한 調查 結果 士氣低下 要因을 보면 職場에 滿足도가 10.6%, 보통이다가 50.6% 낮거나 매우 낮음이 38.8%로⁴⁾ 나타났고 82年度 2월호 자치소방지에서 調查한 消防公務員 士氣低下 要因을 보면 매우 높다가 3.6%, 보통이다 29.5%, 낮거나 매우 낮다가 65.7%⁵⁾로서 全體的으로 낮음을 알수 있다.

이처럼 消防公務員의 士氣가 低下된 要因을 살펴보면,

가) 낮은 報酬

現在 消防士 1號俸은 174,500원 으로서 最低生活(의식주의 해결)도 힘든 형편이다.

이처럼 낮은 報酬는 有能한 人材를 誘引하지 못하며 表(2-3)에서 보는바와 같이⁶⁾ 離職率 또한 높아 公社나 私企業보다 항상 뒤쳐지는 組織이 된다.

消防公務員 離職率 現況을 보면

(표2-3)

區分 年度	定員 (A)	退 職 內 容					比 率 (%)		備 考
		計 (B)	依 願 (C)	罷 免	停 年	死 亡	退職率 (B/A)	離職率 (C/A)	
'83	7,199	288	238	1	31	16	4.0	3.3	
'84	7,828	381	309	12	47	13	4.9	3.9	
'85	8,453	382	319	3	47	13	4.5	3.8	
'86	8,963	303	274	5	12	12	3.4	3.1	
'87	9,805	306	276	6	14	10	3.1	2.8	

* 消防共同施設稅 : 102,000千원

總務處에서는 向後 5年內 公務員의 報酬를 國營企業體와 同等하게 조절한다고 發表한 바 있

4) 消防公務員의 行政行態에 관한 調查 1981. p.61 引用

5) 自治消防 1982. 2월호 p.17 引用

6)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1988. 內務部刊 引用

으나 經濟企劃院에서는 物價조절상 不可能하다고 한다.

낮은 報酬로 能力있는 人材를 登용할 수는 없다.

나) 分身의 二元化

消防公務員法은 單一하지만 消防官은 그 分身이 二元化 되어 있어 地方職은 國家機關인 消防署에 派견되어 勤務하는 形態이다.

이는 昇進의 機會不均等(특히 消防長에서 消防尉) 他市道 및 市郡間의 人事交流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消防의 單一化된 指揮體制 確立에 어려움이 있다.

다) 열악한 勤務條件

派出所 勤務 消防官은 24時間 交代勤務를 原則으로 한다. 따라서 補助이 없어도 月 360時間을 勤務하게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日 8時間의 月 240時間보다 무려 120時間이 많고 또 非番인 경우에도 各種 檢査나 巡察, 訓練 等の 補助時間을 合하면 무려 月400時間 以上을 勤務하게 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時間과는 무려 2배 가까운 時間을 勤務하게 된다. 이처럼 많은 時間의 勤務는 構成員의 士氣를 극도로 低下시킨다.

라) 休息空間의 全無

全國 名 消防署 共히 休息을 爲한 空間이 거의 없는 形便이다. 火災發生後 겨우 샤워를 할 수 있는 정도이고 讀書를 爲한 讀書室, 運動할 수 있는 기구나, 場, 音樂鑑賞이나 趣味生活을 할 수 있는 空間이 絶對的으로 不足하다. 할 일이 없어 무료하여 낮잠이나 잔다면 個人의 發展이 없을 뿐 아니라 組織이 침체되게 된다.

다. 消防官 資質低下

消防官은 高度의 專門知識과 訓練된 技術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他 職種에 비해 勤務條件, 報酬, 社會的 認定度 等이 낮아 우수한 人材가 유입되지 못하는 實情이다. 따라서 이러한 諸條件의 向上과 아울러 적은 費用으로 消防力을 向

上시키기 爲해서는 現在 人員의 資質을 向上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資質向上의 수단으로 教育과 訓練이 繼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爲해서는 教育機關과 研究機關이 있어야 하는데 現在 消防教育을 爲한 教育機關은 內務部 消防學校와 서울 消防本部 傘下의 消防學校, 釜山 消防本部에 教育隊 等 3군대가 있을 뿐이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에서 設立한 專門 研究機關은 全無하다.

明確하지 않은 理論, 日本에서 導入한 日本식의 理論으로 “불을 끄고” 있는 것이 現 우리나라의 實情이다.

構成員의 資質向上을 爲하여 職場教育을 하고 있으나 形式에 치우치는 感이 없지 않아 實効를 거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各道에 1個 以上 消防教育機關을 設立하여 變化하는 消防對象物의 양상에 맞추어 實質的이고 能率의인 教育과 訓練을 實施하여 資質을 向上하고 專門研究機關에서 精密한 研究와 分析을 토대로 하여 주먹구구식의 消防이 아니라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消防行政을 하여야 하겠다.

前에 MBC TV 보도국과 韓國消防安全協會에서 주관한 주택연소 實驗⁷⁾시 記者의 해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금까지 우리 消防은 집 한칸 태워보지 않고 消防을 해 왔던게 事實이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가?

우리나라에도 原子力發電所가 10여個所 있다.

86年 4月の 소련 체르노빌 原子力發電所나 오래전에 있었던 美國 드리마일 核發電所 事故처럼 우리나라도 原子力發電所의 火災가 없으면 法은 없다.

여기에 消防官이 어떻게 對處할 것인가?

물론 덤빌 것인가? 단백포나 수성막포로? 하론으로?…….

專門研究所의 設立이 시급한 問題이다.

7) 이 實驗은 1985. 5.8~5.9.까지 서울시 마포구 아현1동 424번지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가 2층 양육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學術目的의 추구보다는 단순한 現象自體를 관찰하는게 目的이었다.

라. 消防官署 運營豫想의 二元化

現 消防官署의 豫想運營 形態는 內務部에서 교부되는 國費豫算과 地方行政官署인 市에서 교부되는 地方豫算의 二元化로 그 比率은 다음 표(2-4)와 같다.

(표2-4)

(單位: 千원)

區分 計	豫算額		內譯		
	國費	地方費	人力管理	運營管理	裝備購入
493,563	143,666 (29%)	349,897 (71%)	351,459 (71%)	111,145 (23%)	30,959 (6%)

※ 消防共同施設稅: 102,000千원

표에서 본바와 같이 70%가 넘는 地方豫算을 確保하기 爲해서는 每年 豫算策定時 消防署에서는 消防官의 職位高下를 無論하고 市の 豫算實務者에게 급실거려야 하는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條件下의 豫算策定 過程에서 豫算確保를 爲해서는 願하지 않는 不條理 또한 發生되지 않는다고 누가 保障 하겠는가?

當署의 경우도 新設되는 永郎派出所의 新築過程에서 당초 豫算外 추정豫算額이 全額 삭감되므로 工事を 중단하고 있는 實情인바 이 또한 地方官署(市) 豫算에 의존하는 消防豫算의 단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面으로 볼 때 消防豫算을 一元化하는 것은 消防公務員의 士氣振作은 물론 消防의 發展을 爲해 절대 必要한 것이라 하겠다.

마. 消防에 對한 國民認識 결여

經濟의 發展과 産業의 發達로 점차 國民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生活은 便利해지고 있어 各種 危險物과 GAS 等の 使用으로 인한 火災의 危險度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消防의 存在가치와 必要性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國民은 아직도 消防에 對한 必要性和 存在의 가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다. 엄밀히 公務員 채용절차를 밝아 任用되고 있음에도

“消防官(隊員)도 公務員이냐?”

“消防官은 불이 많이 나야 俸給이 많겠다.”

“消防車 1臺當 出動手當은 얼마나?”

“火災가 發生하여 消防車가 出動하면 消防車

1臺當 罰金은 얼마를 내야 하는가?"

等 실로 웃지 못할 國民 認識이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러한 問題에 對해서는 물론 消防에 對한 弘報活動이 不足한 탓이라고도 하겠지만 똑같은 公務員이면서도 公務員 대우를 받지 못하는 勤務條件과 政策 等に 큰 問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도가 한 사람을 살해하여도 新聞, TV, 라디오 等 매스컴에 몇번씩 게재, 방송을 하면서도 火災鎮壓時 消防官이 순직했을 경우에는 國民에게 방송, 게재함은 둘째치고 복무 규율해이, 訓練不足, 指揮責任者 문책 等 各種 與件을 통해 제재되는 조치는 實로 消防公務員 모두의 士氣를 低下시키는 큰 要因中的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의 改善을 爲해서는 낙후된 勤務與件의 改善과 함께 순직 消防公務員의 業務中 發生되는 事故의 事後處理 等 消防行政의 과감한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2. 改善方案

가. 消防人力의 確保

消防人力의 確保 方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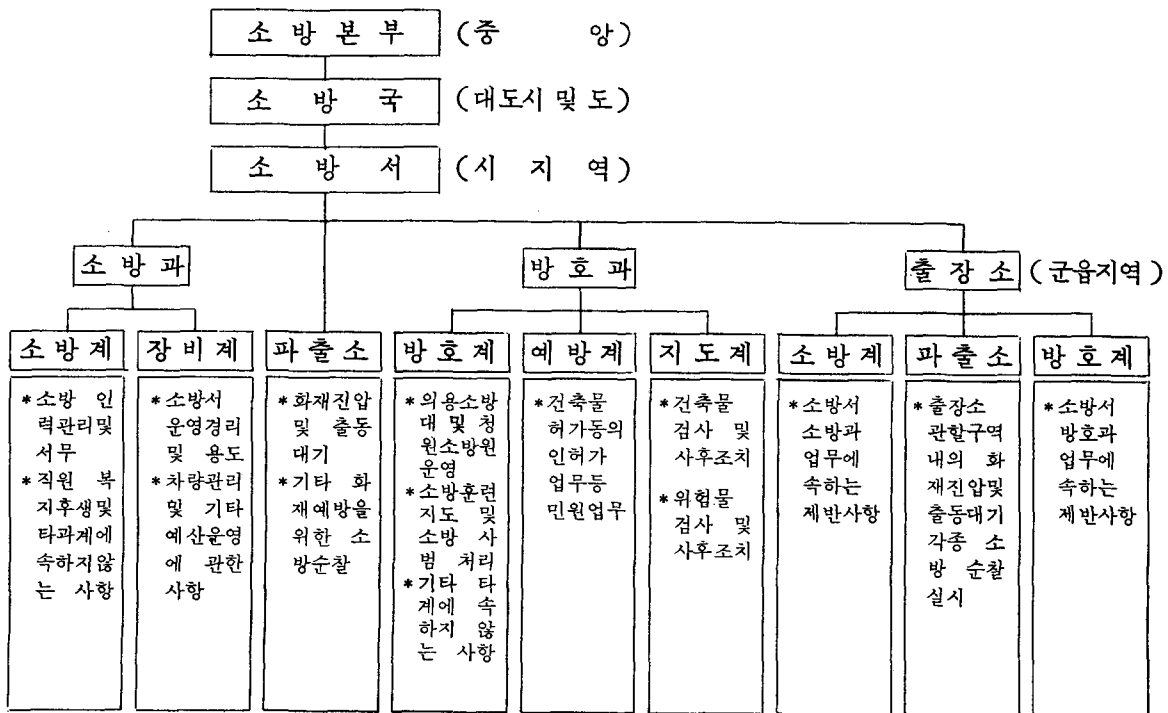
(1) 邑單位에 消防出張所 設置

現在 郡單位는 거의 消防行政의 不在 現象을 초래하고 있는바 最小한 邑單位에 消防出張所를 設置하여 인접 消防署에 入力管理를 하는 形態를 취해 명실 상부한 廣域消防을 하여야 한다. 특히 全國各地에 農工團地가 急速度로 造成되어 火災荷重이 증가되는 現實을 볼 때 그 必要性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消防人力의 確保를 위해서는 邑單位 以上の 地域에 消防出張所의 設置가 必要하다.

現在 全國의 邑은 모두 189個인바 여기에 소방경1, 소방위3, 소방장4, 소방교8, 소방사 16名으로 出張所를 設置한다면 人力이 5,859名이 增加되어 總15,664名이 되므로서 現在의 消防車 1臺當 10名으로 되어 있는 消防力 基準에 관한

(표2-5)

기 구 표



規則과도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보면 표(2-5)와 같다.

(2) 義務消防官制의 도입

現在の 전투경찰이나 義務警察을 警察組織에서는 적절히 活用하여 많은 效果를 얻고 있으며 특히 人件費의 절감이라는 側面에서 各광을 받고 있다.

現在の 各 消防派出所에 이러한 義務消防官을 10名씩만 確保하여 鎮壓 및 人命救助에 임하게 한다면 總所要 人力을 3,320名으로서 消防人力의 確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消防士 급으로 計算하면 年 695,208萬원의 豫算을 절감할 수 있다.

나. 消防官 士氣의 진작

現在 低下되어 있는 消防官의 士氣를 向上 시키기 爲해서는 다음과 같은 方案이 있다.

(1) 報酬의 現實의 引上

現在の 消防士 1號俸은 174,500원인바 5人 家族의 最低 生活費를 生覺해서라도 最小限 250,000은 되어야 하며 또한 消防公務員에게 支給되는 危險手當도 作業의 危險도가 갈수록 增加되고 있는 現實을 감안할 때 현재 11,000원의 危險手當을 月8萬원 以上이 되어야 하겠다.

報酬의 水準을 現實의으로 引上할 때 組織의 士氣도 높아지고 不條理도 저절로 없어져 社會的 認定度도 높아 지므로서 우수한 人材를 유입할 수 있다.

(2) 消防公務員 순직시 國立墓地 安장

現行 消防公務員의 業務를 살펴보면 그 어느 公務員보다도 事故의 危險과 直面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時間 내내 긴장감 속에 있고 火災 出動時 危險과 대치하며 勤務에 임하고 있으나 事故가 發生하여 순직한 경우 軍人 또는 警察과 比較해 볼 때 危險과 死傷者는 消防公務員이 적지 않으면서도 事後 對策에는 政策的으로 外面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最近 消防公務員의 公·死傷者 現況은 표(2-6)와 같다.⁸⁾

(表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每年 많은 消防

(표2-6) 消防官 公·死傷者 現況

○ 事故 原因別(年度別)

'88. 3.7 現在

사상 구분 연도	계	순 직					공 상									
		소 계	화 재	출 동 차 상	순 찰 중	소 계	화 재	출 동 차 상	순 찰 중	근 무	교 육	소 요	정 비	대 기 기 본		
계	202	14	6	1	7	188	93	17	3	2	35	11	12	15		
'85	46	3	2	1		43	19	8	1		8	1	4	2		
'86	59	3			3	56	33	2	2	1	11	3	3	1		
'87	72	4	1		3	68	27	6		1	14	7	2	11		
'88	25	4	3		1	21	14	1			2		3	1		

* 年평균 : 50명(순직3명, 공상47명)

公務員이 순직 또는 事故를 당했으나 그들의 보상은 어떻게 行하여 졌는지 알 수 없다. 이런 政策的인 次元이 우리 消防公務員들로 하여금 自身의 身分을 밝히기조차 부끄러워 할 정도로 士氣를 低下시키고 있다는 點을 과연 이 나라의 統治權者들이 生覺해 본 적이 있겠는가?

科學과 文明의 發達에 따라 날로 더해가고 있는 火災危險속에서 消防公務員들이 自負心과 矜持를 갖고 투철한 使命感으로 職務를 遂行하게 하려면 消防公務員들이 순직시 國立墓地에 安장할 수 있도록 最小限의 政策的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3) 승진기회의 均等 地域間 人事交流의 원활 및 單一化된 指揮體制의 確立을 爲해서도 消防官의 分身을 國家職 또는 地方職으로 一元化 하 여야 한다.

地方自治制의 全面實施를 앞두고 重要한 問題로서 이의 조속 實現이 要請된다.

(4) 勤務與件의 改善

2교대근무와 月 400時間 以上 勤務하는 消防派出所의 勤務를 3交代制로 改善하여 1日 勤務하고 2日 휴식 방안과 8시간 근무제 방안으로 月240時間 同一하게 조정되도록 勤務 規定을 改正하고 各種 補勤制는 시간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되겠다.

(5) 休息空間의 擴大

各 消防署의 派出所에 休息과 運動 그리고 讀書 및 음악감상 등 趣味生活을 爲하여 空間을 만들고 이를 적절히 運營하여 個人의 發展 및 組織의 士氣를 向上하여야 한다.

8)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1988. 內務部刊 引用

다. 消防教育機關 및 研究所의 設立

消防公務員의 資質을 向上시키기 爲한 專門教育機關은 各 市·道에 1個所 以上 設立되어야 한다.

특히 地方自治制의 全面 實施를 앞두고 財政과 監督 權限이 二元化 될 수 없음을 生覺할 때 이의 必要性을 절실히 진다.

또한 內務部 傘下 또는 消防學校 內에 防災專門研究所를 設立하여 特殊火災는 물론 大型, 高層建物이나 地下層 火災等의 現象을 精밀 研究分析하여 주택 구구식 消防이 아닌 科學的 理論이 뒷받침되는 消防行政을 구현하여야 한다.

라. 豫算의 二元化

現在 國·地方費의 二元化된 豫算體系는 그 問題點이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이 있으며, 특히 地方自治制 施行에 따라 豫算의 100%를 地方官署(市)에 의존케 되면 現在와 같은 빈약한 地方財政으로는 積極的 意味의 生産手段이 아닌 消極的 生産手段인 消防業務를 爲하여 充分한 豫算을 投資할 수 없는 것이 事實이며, 이렇게 되면 消防業務의 繼續的인 침체는 물론 消防公務員의 士氣低下 또한 심각한 問題로 대두하게 되는데 이를 改善키 爲해서는 財政의 確保와 豫算의 獨立(全額 國費化)이 重要한 問題이며 그 方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消防共同施設稅 活用

가) 消防共同施設稅의 流用 防止

'88 消防共同施設稅의 目標額은 52,735百萬元 인바 消防事業費는 20,065百萬元으로 투자율이 38% 밖에 되지 않는다.

消防共同施設稅는 地方稅法 第240條에 의해 징수되는 目的稅로서 이는 消防共同施設 外의 他 용도로 使用할 수 없음에도 62%가 유용되고 있다.

이의 유용을 徹底히 막아 全額 投資되도록 한 다면 消防豫算 確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生覺된다.

나) 消防人 地方自治議員制 推進

앞으로 實施할 地方自治制의 地方自治議員中

에 職能 代表制로서 消防人 議員이 탄생되도록 政策的인 배려가 우선 있어야 하겠으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豫算中 消防豫算은 地方自治議員會 總會에서 消防關係官으로부터 所要豫算의 必要性을 報告받은 後에 消防豫算을 심의토록 하여 결정함이 效果의이라 生覺된다.

2) 石油類(LPG), LNG 等에 消防稅 부과

'87年末 現在 全國의 石油類 유통량은 210,515 千 배럴로서 여기에 배럴당 50원씩만 消防稅를 부과하여 目的稅로 使用한다면 年間 1,052,575千 圓의 財政이 조달되고 여기에 LPG, LNG 等에 가스의 유통량에 따른 消防稅를 부과한다면 消防業務의 改善運營에 決定的인 도움을 줄 수 있다.

受益者 부담 原則에서 볼 때도 石油類는 消防法 上에서도 危險物로 分類하고 이로 因한 火災의 概然性이 表(2-7)에서 보는 바와⁹⁾ 같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표2-7)

구분 년도별	위험물		도입량		위험물화재발생건수			비 고
	원유	LPG	LNG	계	유류	가스		
'85	198,313천배럴	607천톤	0	1,037	834	203		
'86	230,063 "	641 "	120천톤	944	715	229		
'87	216,163 "	900 "	1,680 "	1,037	737	300		

III. 結 論

現實的인 消防力 向上方案은 上記한 것 以外 에도 여러가지 方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消防力 向上에 關한 消防關係人의 研究가 繼續되 어 온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이의 革新的인 發展이 없는 것은

첫째: 政策決定權者 및 住民의 消防에 對한 無關心과 몰이해

둘째: 地方財政의 빈약

셋째: 組織力의 빈약과 組織 構成員의 努力

9) 動力資源部 및 內務部 統計 參照.

不足으로 要約할 수 있다.

이러한 點을 改善할 수 있는 方法도 더욱 研究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뿌리있는 組織으로 定着해야 할 必要를 절실하게 느낀다.

現 與小野大의 國會에서 野黨의 公約中 民防衛 폐지가 있다. 만약 內務部에서 警察이 廳으로 獨立하면 남는 것은 民防衛 組織인데 이마저 野黨의 公約대로 폐지된다면 우리 消防은 地自制 全面實施를 앞두고 組織의 뿌리가 어떻게 事實的으로 바뀔지 咄咄하다.

이러한 面에 있어서의 現實的인 改善方案도 研究되어야 하고 좋은 方法이 있다면 積極 推進해야 할 것이다.

'82年 第1回 消防行政 研鑽大會를 開催한 이래 이번이 第4回 研鑽大會를 開催하게 된다. 여기에 研究되고 發表된 論文이 現實的으로 政策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와 發表가 繼續될 때 비로소 消防은 하나의 社會學으로서의 位置를 定하게 되며, 政策 決定者나 國民에게 關心을 끌 수 있을 것이다.

消防力 向上은 과감한 豫算의 投資 및 構成員

모두의 關心과 研究努力, 그리고 統治次元에서의 關心이 三位一體 될 때 비로소 이룩될 수 있다고 生覺된다.

이러한 分野에 對한 消防關係人 모두의 研究努力을 기대하면서 맺는다.

參 考 文 獻

1. 第1回 消防行政 研鑽大會 結果報告書, 1982年 內務部 消防局 消防課 刊.
2. 第2回 消防行政 研鑽大會 結果報告書, 1984年 內務部 消防學校 刊.
3. 第3回 消防行政 研鑽大會 結果報告書, 1986年 內務部 消防學校 刊.
4. 優秀研究 論文集 1986年 內務部 消防學校 刊.
5. 優秀分任討議 論文集 1987年 內務部 消防學校 刊.
6. 優秀研究結果 論文集 1987年 內務部 消防學校 刊.
7. 第3回 消防行政 研鑽大會 研究論文集, 1986年 江原道 刊.
8. 消防行政資料 및 統計 1988. 1. 1. 內務部 刊.
9. 自治消防 및 消防安全誌 多數